요양시설(장기요양기관) 방역수칙 변경 안내

('22.4.22. 중수본 요양시설 대응팀)

□ 추진배경

○ **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**('21.11.18~)에 따른 **현장 민원 증가,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 등을 감안,**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**방역수칙 일부 완화**

□ 주요내용

1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

○ **(대상)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**

※ 단, 코호트 격리 중인 입소자는 제외

①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

< 전파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>

연령 기준	미 확진자		기 확진자	
	입소자	면회객	입소자	면회객
18세 이상	4차 접종	3차 이상 접종	2차 이상 접종	
17세 이하	해당 없음	2차 이상 접종		

②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(해제 후 3일 ~90일 내*)

* 확진자의 재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간 설정

※ **예**: 면회일이 4.30 일인 경우, 1.30-4.27 사이에 코로나 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

○ **(기간) '22.4.30(토)~5.22(일), 한시적 적용**

○ **(수칙) 면회객, 입소자, 시설**의 **상호 동의 하**에 진행하고, **사전예약**을 통해 면회객을 분산, **별도 공간**에서 **방역수칙**을 준수하여 면회

* 상호 동의를 한 경우, 면회 후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시설 책임은 없음

① **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** 이내로 제한하고, **사전예약**을 통해 **동일 시간대 면회객을 분산**

* 시설에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, 면회 전날 면회 시간과 주의사항 문자메시지 안내(붙임 참고)

② 면회는 **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**에서 실시하고, **실시 이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, 손 소독, 면회객 RAT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**

- 면회객은 **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(RAT) 실시**하고 음성 확인, **일반 신속항원검사(RAT)로 현장 확인**도 가능(면회객이 자가검사 키트 지참)

  ※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및 RAT 검사 제외
- 마스크(KF94, N95) 착용 + 발열 체크 +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입장
- 시설에서는 면회객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, 음성확인서(SNS, 문자 통지서 등) 등을 확인하고 인원 체크 및 면회객 명부작성

③ 면회 시, **마스크를 내리고 대화**하거나 **음식·음료 섭취는 불가**

* 시설에서는 면회 장소에 확진 후 격리해제자 또는 4차 접종 완료한 직원을 배치하여 관리 권고

④ 면회 후, **면회공간을 소독**하고 **최소 15분 이상 환기**

2 기존 입소자 PCR 검사 폐지

○ **(주요내용) 기존 입소자의 PCR 선제검사 폐지**

* (기존) 미접종 입소자 대상으로 주1회 PCR 검사 실시

○ **(적용시기) '22.4.25(월)~**

※ **종사자**(주 2회 PCR + 주 2회 RAT)와 **신규 입소자**(2회 PCR 검사 + 4일 격리) **선제검사는 현행 유지**